#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40

발의연월일: 2025. 4. 18.

발 의 자:김동아·전현희·박정현

문진석 • 양문석 • 이정문

김영호 · 조계원 · 윤준병

박선원 · 김영배 · 이병진

허성무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 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1항).

#### 법률 제 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하도급거래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 도급거래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서면 하도급계약서 발급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
- 2.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실태
-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실태
- 4. 하도급대금 지급 및 대금지급 보증 실태
- 5.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	조사) ①
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u>하도급거래에</u> 관한 서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u>
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	함한 하도급거래에
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1. 서면 하도급계약서 발급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
<u>&lt;신 설&gt;</u>	2.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실태
<u>&lt;신 설&gt;</u>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실태
<u>&lt;신 설&gt;</u>	4. 하도급대금 지급 및 대금지
	급 보증 실태
<u>&lt;신 설&gt;</u>	5.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